

## 연구소 평가규정

제정일 : 2002. 9. 1

개정일 : 2011. 8. 24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4조(평가) 제3항에 따라 본교 부설연구기관의 운영·관리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4. 12. 1, 2009. 7. 27>

**제2조(평가대상)** 본교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연구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. 단,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된 연구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04. 12. 1, 2009. 7. 27>

**제3조(평가원칙)** 연구소의 평가는 공통영역과 특화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 <삭제 2011. 8. 24>

**제4조(평가기간)** 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 8. 24>

### 제 2 장 평가기준

**제5조(평가기준)** ① [별지 제1호 서식]의 연구소 사업결과 심사기준표를 평가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04. 12. 1, 2009. 7. 27, 2011. 8. 24>

② 공통영역 및 특화영역을 지정점수로 설정하고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점수로 한다. <삭제 2011. 8. 24>

**제6조(평가등급)** [별지 제1호서식]의 연구소 평가인정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연구소의 등급을 A,B,C, D로 결정한다. <삭제 2011. 8. 24>

**제7조(평가결과활용)**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차등 지원하며 연구소 통폐합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. <개정 2011. 8. 24>

### 제 3 장 평가방법

**제8조(평가방법)** 연구소 평가는 연구소 사업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방문평가를 할 수 있다.<개정 2004. 12. 1, 2009. 7. 27, 2011. 8. 24>

**제9조(평가단 구성)** ① 연구소의 평가는 연구기관 심사단에서 실시한다.

② 연구기관 심사단은 산학협력단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심사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<개정 2006. 3. 1, 2009. 7. 27, 2011. 8. 24>

③ 심사단장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04. 12. 1, 2009. 7. 27, 2011. 8. 24>

**제10조(평가절차)** ① 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평가는 2월까지 완료한다. <개정 2006. 3. 1, 2011. 8. 24>

② 연구소는 연구소 사업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 중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.<개정 2004. 12. 1, 2009. 7. 27, 2011. 8. 24>

③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연구소의 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으로 하고, 재차 평가를 신청하지

않을 경우 하위 등급으로 재 산정 한다.<개정 2004. 12. 1><삭제 2011. 8. 24>

**제11조(이의신청)**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7. 2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---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1. 8. 24>

### 연구소 사업결과 심사기준표

심사항목	심사내용	기준 점수
설립 목적 및 필요성 (20점)	▪ 목표의 명확성	10
	▪ 목표의 규모	5
	▪ 목표 설정의 적절성	5
목표 달성도 (40점)	▪ 참여 연구진의 관련 실적	15
	▪ 목표의 달성 결과	25
목표 달성 과정 (20점)	▪ 추진일정 및 내용의 타당성	10
	▪ 일정별 자체평가(진도관리) 실시의 적정성	10
연구소 운영 현황 (10점)	▪ 예산 집행의 적절성	5
	▪ 연구소 발전 가능성	5
대학 발전의 기여도 (10점)	▪ 대학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	5
	▪ 대학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	5
총 점		100